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1228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김승현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8.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5,857,1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857,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제2, 3, 4, 5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각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13704), 2013. 9. 10. C은 원고에게 4,5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배우자인 D은 2022. 10. 13.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자녀로 E와 피고를 두었다.

다. 피고는 2022. 12. 16. 망인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F의 2019. 11.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2023. 1. 5.에 2023. 1.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4,90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식대 1,000만 원, 수당 2,900만 원)에 이른다. 원고와 C은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원고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3/7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와 E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C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나) 우선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21. 6.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비 본인부담금 5,7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피고의 카드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병원비 부담을 넘어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위 병원비 부담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4억 2,000만 원 이상(갑 제3호증, 이 법원의 G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C과 E가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C과 E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1, 2)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6.경 작성된 것이고, 위 각 사실확인서 외에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기여분 협의를 기초로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애초 답변서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의논했던 것은 어차피 법정상속대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누나나 본 피고에게로 다시 상속재산으로 넘겨야 될 번거로움만 있을 것이니 일거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여 차제에 본 피고에게로 넘기기로 해서 등기를 마쳤던 것일 뿐이고 다른 의논은 의논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피고의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특별수익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8~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명의 2002. 8. 23.자 대출금 7,800만 원이 C의 개인택시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망인 명의 계좌에서 2006. 5. 2. 1,803,500원, 2006. 12. 14. 9,063,500원이 각 대체대출금되었는데 그 적요란에 '부산 C'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위 대출금 7,800만 원이 대출일로부터 1년도 안 된 2003. 3.경 모두 상환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 점, C의 개인택시 운용은 가족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위 각 대체대출금의 구체적인 수수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위 대출금이나 대체대출금액 등 합계 89,407,000원을 특별수익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상과 같이 피고의 기여분, C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에 대하여 몰랐다면 선의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채무자인 C의 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억 1,000만 원(갑 제3호증)이고,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억 300만 원(다툼 없음)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3/7 지분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45,857,142원 $[(2\text{억 } 1,000\text{만 원} - 1\text{억 } 300\text{만 원}) \times 3/7]$ 이다. 한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8. 기준으로 147,020,219원¹⁾에 이르는바,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45,857,1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857,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제2~5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분할협의 중 별지 제2~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제2~5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정왕현

별지

1) 4,530만 원 + $[4,530\text{만원} \times (11 + 83/365) \times 20\%]$